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별표 3] <신설 2024. 9. 27.>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납부금액(제15조제3항 관련)

계약질서위반행위	납부금액
<p>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경우</p> <p>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경우</p> <p>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경우</p> <p>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경우</p> <p>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p> <p>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p> <p>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경우</p>	<p>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p>
<p>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경우</p> <p>가. 공사</p> <p>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경우</p> <p>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경우</p> <p>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경우</p> <p>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p> <p>나. 물품</p> <p>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p> <p>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p> <p>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p> <p>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p>	<p>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p> <p>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p>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을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경우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경우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해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4.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5.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

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6.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부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2) 시공에는 참여했으나 출자비율 또는 부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해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7.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p>해당하는 경우(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p>	
<p>8.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p>	<p>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p>
<p>9.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p>	<p>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p>	<p>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p>
<p>10.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p>	
<p>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p>	<p>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p>	<p>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p>
<p>11.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p>	<p>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p>

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경우]	
--	--

#### 비고

1. 위 표에서 “계약금액”이란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연평균 계약금액을 위 표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본다. 다만,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을 위 표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본다.
6. 비고란 제5호의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7. 기관장은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납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위 표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